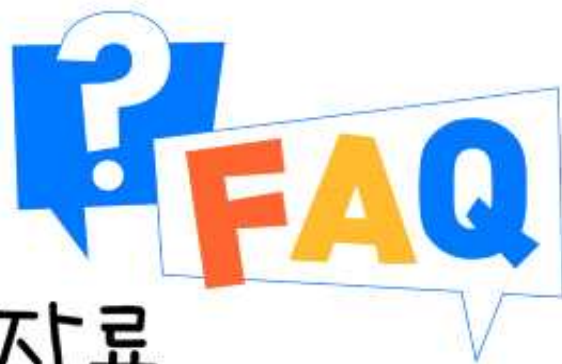




연말정산 간소화자료

일괄제공 서비스 알아보기 (근로자용)



대전지방국세청
NTS Daejeon Regional Office

목 차

* 질문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

연번	자주 묻는 질문	페이지
1	'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'란 무엇인가요?	1
2	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?	1
3	근로자가 확인(동의)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	1
4	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와 일정은? ('25년 귀속 기준)	2
5	근로자 확인(동의)은 어떻게 하나요?	2
6	홈택스 로그인 후 추가 인증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?	2
7	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(동의)했는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?	3
8	올해는 일괄제공 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?	3
9	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나요?	3
10	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?	4
11	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나요?	4
12	근로자 확인(동의)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였으나, 화면에 아무 정보가 뜨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	5
13	회사에 일괄제공 되는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?	5
14	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자료도 일괄제공 되나요?	5

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인가요?

- 회사의 신청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'연말정산 간소화자료'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해 주는 연말정산 서비스



- 종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PDF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
-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(부양가족 포함)의 간소화 PDF자료를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2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?
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이므로 의무는 아닙니다.
-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,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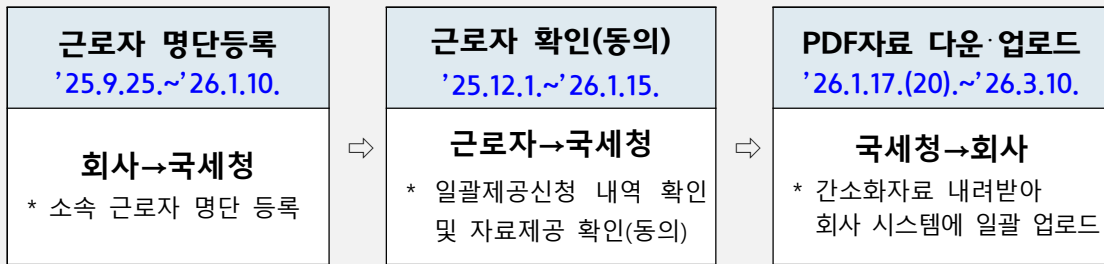
3 근로자가 확인(동의)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(동의)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. 따라서 확인(동의)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4

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와 일정은? ('25년 귀속 기준)

- 홈택스에 (근로자 명단등록)→(자료제공 확인·동의)→(일괄 다운로드) 순으로 진행됩니다. 회사는 매년 1회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며,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초 1회 확인(동의)한 이후에는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일괄제공 됩니다.



5

근로자 확인(동의)은 어떻게 하나요?

- 회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근로자 명단을 제출한 경우, '25. 12. 1.부터 '26. 1. 15.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(앱)에서 가능합니다.

홈택스(PC) 접근경로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연말정산 일괄제공 → (근로자용) 일괄제공 동의/조회/취소

손택스(앱) 접근경로

국세청 손택스(앱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(동의) 및 조회

6

홈택스 로그인 후 추가 인증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?

- 작년의 경우, 일괄제공 확인(동의)은 개인 공동인증, 금융인증, 간편인증(휴대폰, 카드인증 불가)으로 추가 본인인증을 해야 가능하였으나
→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, '26년 1월부터 '간편 문자인증' 방법이 추가*되었습니다.

*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+ 간편문자인증 ⇒ 일괄제공 확인(동의) 가능

7

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(동의)을 했는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?

-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(동의)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. 이직하여 회사가 변동되었다면 올해 다시 확인(동의)하여야 합니다.

8

올해는 일괄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?

- 네, 근로자는 '25. 12. 1.부터 '26. 1. 15.까지 '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(동의), 취소 및 조회'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9

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나요? (※ 주의사항 필독)

- 회사로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가 있거나, 소득·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'26. 1. 16.(1.19.)까지* 홈택스에서 자료 삭제하면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
*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짜가 1.17.인 경우 1.16.까지(1.20.인 경우 1.19.까지)

홈택스(PC) 접근경로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

※ 주의사항 ※

-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삭제하여야 하며, 만일을 대비하여 삭제 전에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.
-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한 뒤 해당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0

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?

-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 하루 전까지*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. 이미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서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.

*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짜가 1.17.인 경우 1.16.까지(1.20.인 경우 1.19.까지)

- 근로자는 홈택스의 '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/취소' 화면이나 '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(동의), 취소 및 조회' 화면에서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1

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나요?

- 네.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* 또는 사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배제하여 간소화자료 제공합니다.

*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, 신용카드·보험료·교육비·기부금 공제 불가

- '25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¹⁾이 100만원(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²⁾하고 일괄제공 됩니다.

1) 상반기의 근로, 사업·기타소득(간이지급명세서)과 퇴직, 양도소득을 반영

2) 의료비·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공

- 다만,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여부는 '25년 10월까지 제출된 소득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는 연간 소득금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.

- 소득초과 등으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·내려받기는 가능합니다.

12

근로자 확인(동의)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였으나, 화면에 아무 정보가 뜨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소속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(근로자 명단 등록)을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명단 등록을 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13

회사에 일괄제공 되는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?

-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(홍** 800101-*****)하여 보여줍니다.
- 또한,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가 일괄제공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'26. 3. 10.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14

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자료도 일괄제공 되나요?

- 아니요.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장애인 관련 자료 2종(발달 재향서비스 확인서, 장애인활동급여자료)은 일괄제공 자료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만, '26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 공제*의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므로 개인적으로 조회·출력은 가능합니다.

*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없이 초과금액의 15%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